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보도자료]

지난 8월 14일 공식 출범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중요한 언론개혁 방안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조작 보도 또는 정보의 유포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정보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여론 왜곡을 바로잡고 침해된 법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것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특위는 언론계와 언론학계, 시민사회 여러 분야의 단체와 종사자들을 만나 법 개정 추진의 목적과 방향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특위에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개 토론회와 비공개 간담회 등을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위 논의를 거친 뒤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민주당과 특위 내부에서 논의돼 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추후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

===== 아 래 =====

1. 이른바 <악의적 오보> 개념의 법적 정의

① 현행 언론중재법 상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허위보도>(오보)

- 제14조 1항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
- 제14조 2항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허위보도>로 칭해지는 개념

② <허위조작 보도>를 새롭게 규정

-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지칭
-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
- <허위조작 보도>는 보도와 인용, 매개에 대해 모두 책임 가중

2. 유튜브 등에 대한 규율 방식

① 아래 두가지 방식을 놓고 검토 중

- 언론중재법으로 유튜브 등을 포섭해 개정
-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동시 개정

② 각 방식에 따른 규율 방식

- 언론중재법 포섭 방식은 유튜브 등을 언론으로 의제하고, 그 범위를 시행령으로 특정
-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동시 개정 시 언론중재법에서는 기존 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튜브 등에 대해 언론중재법 준용하도록 규정

3.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

① 시행 중인 23개 징벌적 손해배상 법은 모두 상한 규정

(3배 또는 5배가 최대치)

② 실제 소송에서 인정 사례는 매우 적으며 배액을 인정하더라도 2배 이하

③ 검토 중인 배액 수준은 이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못 미침

④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

4. 배액 손해배상 적용 방식

① 상한 규정은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함

② 절대 배액제 채택

③ 고의/중과실에 따른 차등, 보도/인용, 매개에 따른 차등 배액

- 고의로 <허위조작 보도> 기본 손해액의 ○배

-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 기본 손해액의 △배
- 고의로 <허위조작 보도>를 인용, 매개할 경우 기본 손해액의 △배
-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인용, 매개할 경우 기본 손해액의 ◇배

④ 추가 배상액 결정 요소

- 보도의 파급력, 고의의 정도,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 고려 (증액 요소)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증감 요소)

⑤ 배액 적용은 다음 두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함

- 보도, 인용, 매개의 대상이 <허위보도>로 입증
- 보도, 인용, 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

5. 기본 손해액와 기준 손해액

① <허위조작 보도>의 기본 손해액

- 고의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는 ○○원
-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는 △△원

② <허위조작 보도>를 인용, 매개한 경우의 기본 손해액

- 고의로 <허위조작 보도>를 인용, 매개한 경우는 ◇◇원
-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인용, 매개한 경우는 □□원

③ 피해 입증이 없어도 배액 적용 위한 기준 손해액은 기본 손해액

④ 입증되는 손해가 기본 손해액을 초과하면 기준 손해액은 실질 손해액

※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

(2016년 10월 20일 / 사법연수원 주최 법관세미나에서 공표)

- 명예훼손에 의한 일반 피해는 5천만 원, 가중금액은 1억 원
- 명예훼손에 의한 중대 피해는 1억 원, 가중금액은 2억 원
- 법원은 중대피해를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 신용의 가치가 중대한 경우>로 제시
- 피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는 가중의 제한을 두지 않음 (“명예훼손의 경우 기준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가중금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가중금액의 초과가중이 가능함을 명시하되 그 가중의 한도는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술)

6. 봉쇄소송 방지책

① 배액 손해배상 청구에는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우선주의 적용

(언론중재 단계에서는 배액 손배 불가)

② 추가 봉쇄소송 방지책 (1안)

- 배액 손배소를 제기하려는 권력층에는 언론중재위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제21조), 직권 조정결정(제22조) 수용 의무 부과
- 언론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반 손배소 제기만 가능
- 언론중재위 판단에 불복하여 배액 손배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 소송을 거쳐야 함 (제25조 중재결정 취소의 절차를 준용)
- 사실상 권력층은 조정불성립 또는 언론사 등에 의한 직권조정결정 거부(이의신청)에 의해서만 배액 손배를 다투는 소송을 할 수 있음

③ 추가 봉쇄소송 방지책 (2안)

-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규정(권력층 등의 제소 대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이고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중간판결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제소는 중간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며 중간판결 신청의 이유가 인정되면 제소 자체가 기각)
-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권력층으로 특정할 필요 없음
- 이를 도입할 경우 권력층에 대한 배액 손배 청구권까지 제약하는 것은 과도

→ 언론계에서는 권력층의 배액 손배 청구권 일괄 배제 요구 (현업 단체 공동 성명)

→ 권력층은 대항력과 자구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권력층 대상 <허위조작 보도>는 법익 침해와 손해 발생의 정도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 강화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

→ 일괄 배제할 경우 <권력층 대상 허위조작 보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위 봉쇄소송 방지책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언론중재법 목적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

→ 게다가 위 봉쇄소송 방지책이 오히려 소송 남발을 제어하는 데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

→ 권력층이 손해배상액 적다고 해야 할 소송을 안 하는 것이 아닌데도 손해배상액 증가가 소송 남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인식에 동의하기 어려움

→ 권력층 관련한 정책 목표는 오히려 배상액과 무관하게 <일단 걸고 보는 행태>를 해소하

는 쪽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 언론을 향한 부당한 압박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언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총체적으로 조감하며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 설계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봄

→ 방송법을 통해 방송사 경영진의 부당한 보도 간섭을 막고(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 경영진이 이를 핑계로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 관련), 보도 공정성에 대한 심의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하고, 명예훼손죄가 언론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보복 또는 괴롭힘 소송을 막기 위한 법제를 도입하는 등의 종합적인 법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다만, 이를 한꺼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 일괄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치 현실, 국회 입법 구조에 비춰 볼 때 비현실적

→ 방송법을 개정했고, 언론중재법 개정과 보도 공정성 심의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듯 순차적으로 과제들을 추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판단

→ 민주당 내 명예훼손 법제 개편과 괴롭힘소송 방지 입법을 위한 노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봄

7. 입증책임

① 법원이 언론 등에 보도의 사실 입증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함

(특허법 제132조 준용)

②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배액 손해 청구인(피해자)이 입증

③ 언론사 등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추정케 하는 요건 규정

- 언론사 등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허위보도(오보)임이 입증되는 것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 허위보도(오보)로 판명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한 경우와 이를 인용, 매개한 경우
- 허위보도(오보) 전후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광고와 향응 등의 금품 또는 인사와 정책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 제목이 허위보도(오보)인데 본문에는 제목의 허위가 포함돼 있지 않음이 명백할 때와 이를 상당 시간 동안 그대로 인용, 매개한 경우
- 허위보도(오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론취제가 없었을 때와 반론이 없음에도 이를 상당 시간 동안 그대로 인용, 매개한 경우 (피해자의 불응은 제외)
- <정정보도 청구 관련 표시 의무>(후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8. 정정보도 청구 등 관련 표시 의무 강화

① 의무 대상의 확대

- 현재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만 정정보도 청구가 있음을 표시할 의무 부과 (반론보도와 추후보도에도 동일 적용)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도 동일 의무 부과

② 의무 표시 내용의 추가

- 현재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다는 사실만 표시
- 청구 관련 정보와 이후 언론중재위와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까지 표시 (업데이트 의무화)

③ 표시 방식의 강화

- 현재는 해당 기사에 표시하도록 규정
- 해당 기사에 표시하고 메인페이지 메뉴에서 특정 기간의 표시 의무 대상 보도 등의 목록과 각각의 표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함
- 해당 기사의 표시는 메인페이지 메뉴로 연결되는 링크

9. 허위보도(오보)와 정정보도의 파급력 비례 원칙 반영

① 오보는 대문짝만하고, 정정보도는 쥐꼬리만한 실태 개선

② 보도 등이 이뤄진 매체 특성 고려하여 정정보도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 (신문은 오보 지면 좌상단, 인터넷신문은 메인화면 최상단 등)

③ 법원이 오보 파급력에 비례해 정정보도의 크기, 횟수, 기간 등 결정

④ 별도 메뉴에서 특정 기간의 정정보도 목록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함 (정정보도 청구 등의 표시 내용을 확인하는 메뉴와 동일)

<끝>